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임원 공개모집 공고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을 이끌어갈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7. 7.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직위 및 인원

구분	직위	모집인원	근무형태	임용기간
임원	선임직이사	1명	비상근	임용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나. 주요직무

- (선임직 이사) 서비스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다. 임용계약 및 보수

- 해당 직위는 선임직이사로서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 단,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응모 자격 (기준:공고일 기준)

가. (필수요건)「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로 한다.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3. <삭제 2025.9.12.>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또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그 외 지방공무원법, 각 사업의 관계법령 또는 지침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자격요건)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행정·경영마인드 및 임원으로서 기본역량*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기본역량: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선임직 이사]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⑤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의한 '사회서비스' 관련분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

3 주요업무 및 직무수행요건

가. 주요업무

1)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선임직 이사) 서비스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사항 심의·의결

재단법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사업(정관 제4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이사회의 기능 (정관 제19조 의결사항)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원의 제반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서비스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하거나 수탁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금지원 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9. 분사무소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에서 정한 사항
12.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직무수행요건

(선임직 이사) 해당분야 대표성 및 전문성, 직무수행 적합성, 해당분야
활동 경력, 지역사회 공헌도

4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기간: 2026. 7. 7.(화) ~ 7. 28.(화) 18:00

나. 접수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세종시서비스원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게시판의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토·일요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접수 마감시간(7.28. 18:00) 전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배송 중 분실에 따른 미접수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다. 접 수 처: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앞

5 제출서류

가. 지원서(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별지1) 1부.

나.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A4 5매 이내, 별지2) 1부.

다.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별 발행)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마. 기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사. 지원서에 기록한 각종 업적(관련분야 논문발표, 연구 및 과제수행실적, 연구기술, 포상, 국제화 활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자.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별지3) 1부.

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4) 1부.

6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심사

- 1) 심사방법: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기준으로 심사
- 2) 평가기준
 - 선임직 이사: 전문성(30점), 직무수행 적합성(30점), 해당분야 활동경력(20점), 지역사회 공헌도(20점)

3) 합격자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나. 임용절차: 임원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세종시장)

다. 최종합격자 발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

7 기타사항

가. 본 일정 등은 서비스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30일 이내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청구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반환방법: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발송 또는 직접 수령

다.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가 첨부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라. 응모자 수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유선 또는 문자 발송으로 통지하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바. 지원서에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44-850-8113)